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5. 6. 20.>

긴 급 임 시 조 치 결 정 서

제 0000-00000 호 . . .

다음 사람의 *(죄명)* 피의사건에 대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아동학대
행위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- (세)</td></tr>
<tr><td>직 업</td><td></td><td>피해아동등과의 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거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피해아동등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긴급임시조치
내용</td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
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
[]그 밖의 장소(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긴급임시조치
일시 및 장소</td><td>일 시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 시 분</td></tr>
<tr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</td><td colspan="3">별지와 같음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
소속:

사법경찰관 (서명 또는 인)